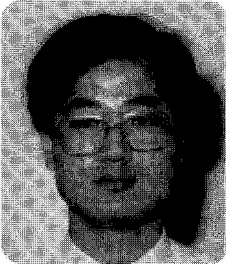


의장등록 제도



홍 창 원
〈특허청 사무관〉

목 차

I. 의장등록 제도
 II. 의장심사 절차
 III. 의장등록 보호제도
 IV. 의장권의 침해구제

〈이번호에 전제〉

I. 의장등록 제도

1. 의장의 의의

- 의장이라 함은 『물품의 형상,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유발시키는 것』을 말한다.
-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의장의 창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특허청에 의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.

2. 의장등록 요건

의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.

가. 공업상 이용가능성

- 의장은 공업적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한 물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
-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려면 독립된 물품으로서 거래될 수 있어야 하며, 순수창작물 또는 천연물 등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.

나. 신규성

- 의장은 국제주의원칙을 채택하여
 -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
 -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
 - 이들 의장과 유사한 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.

다. 창작성

- 의장등록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의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.

3.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

- 국기·국장·군기·훈장·포장·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·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
-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

-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

4. 의장등록 방식요건

의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가. 의장등록출원

- 의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출원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
 -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
 -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
 -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
 - 출원일자 등
- 또한, 의장을 표현한 도면 또는 사진은 6면도로 작성하여야 한다.
 - 정면도 - 배면도
 - 좌·우 측면도 - 평면도
 - 저면도

나. 유사의장 제도

- 의장권자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한 의장(기본의장)에만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는 유사의장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기본의장의 출원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.

다. 한벌 물품의장

- 2종 이상의 물품이 관습상 한벌의 물품으로 판매되고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벌 물품의 의장은 한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의장으로 의장등록 출원할 수 있다.

라. 비밀의장

- 의장등록출원인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장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그러나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의장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.
 - 의장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
 - 그 비밀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관한 심사
 - 의장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
 -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

마. 선원주의

-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므로 서둘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.

II. 의장심사 절차

1. 출원서 접수

- 특허청은 출원서류가 접수되면 접수순에 의하여 출원번호를 통지한다.

2. 보정지시

- 출원서류가 미비하면 특허청은 보정지시를 하며, 지정기간내에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출원은 무효로 된다.

3. 실체심사

- 심사관은 출원번호 순서대로 심사에 착수한다.
-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등록사정 한다.

- 출원인은 등록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정의 등록표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일반적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~1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.

4. 거절사정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

-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거절사정서를 발송한다.
 - 거절사정에 불복할 경우 거절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 항고심판소('98. 3월부터는 심판원)에 거절사정불복항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

Ⅲ. 의장등록 보호제도

-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.
- 의장권 존속기간 : 의장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
- 의장권의 효력
 -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. 의장권자의 허락없이 그 누구도 의장을 표현한 물품을 생산, 사용, 양도, 대여, 수입 또는 전시를 할 수 없다.
 - 의장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의 행위를 한 자는 의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침해금지청구, 손해배상 및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.

Ⅳ. 의장권의 침해구제

1. 민사적 구제

가. 침해금지청구권

- 자신의 의장권,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.
- 또한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,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,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.

나. 손해배상청구권

-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에는 침해한 자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민법상의 일반규정 이외에도 의장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다. 신용회복청구권

- 법원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의장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2. 형사적 구제

-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

발특9703